

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및 제출일자 : 포항시장(2025. 11. 24.)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11월 25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7회 포항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-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(2025. 12. 22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도시계획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(안 제20조제2항)
-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열람·재공고 대상 설정(안 제21조의2제2항)
-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(안 제25조제2항)
-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정비(안 별표 1)
- 농림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(안 별표 21)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

3. 제안근거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「건축법 시행령」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명권)

-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,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여 시민의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으로
 - ▶ 안 제20조제2항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유치원, 아동 관련 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을 추가함
 - ▶ 안 제21조의2제2항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재열람·재공고토록 함
 - ▶ 안 제25조제2항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건폐율을 80 퍼센트까지 상향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함
 - ▶ 안 별표1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공작물의 재설치를 추가하고 절·성토 높이 산정 방법을 누적 기준으로 명확히 함.
 - ▶ 안 별표21에서 농림지역 내 건축제한을 완화
 - *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⇒ 단독주택(1천제곱미터 미만)
- 종합검토 결과,
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중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여 행정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,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규정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, 개발행위허가 대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도시계획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 략

6. 토론의 요지 : 없 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